

美國의 刑事司法 政策(Ⅱ)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엘리트의 대응—

池 晟 宇*

〈目 次〉

I. 서설	1. 기본입장
1. 개요	2. 범죄와 총기
2. 범죄의 문제	3. 범죄와 마약
II. 경찰과 법집행	III. 요약 및 결론

I. 서 설

1. 개 요

어떤 사회든지 직면하고 있는 범죄, 폭력, 그리고 무질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정부는 그것을 진압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수천년 동안, 철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개인들의 자유와 정부의 권력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문제로 논쟁해 왔다. 어떻게 하면 사회의 안정성을,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그리고 위협스런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서도 개인들의 자유를 실현시킬수 있을까? 일찌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

* 벽산건설 총무이사(전, 총경)

(Thomas Hobbes)는 사회는 인간들이 가지고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Leviathan”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내에서의 강력한 권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서로간의 공격행위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신분을 갖지 못하는 것의 관념”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자유는 법과 질서의 상대적 관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사회내에서 어떤 자유가 있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법과 질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유가 질서있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유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인간들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부를 만들었다. 법과 정부는 그 자체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범죄의 문제

사회내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하는 일은 쉬운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범죄발생율은 F.B.I가 조사하고 있는 단일범죄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FBI의 보고서는 주립경찰기관과 지방경찰기관에 의해 제공된 숫자에 기초하고 있다. FBI는 경찰에 보고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비율(살인, 강간, 노상강도, 상해, 주거침입강도, 소매치기, 절도 그리고 차량절도를 포함)의 단일분류작업을 이룩했다.

1960년에서 1975년까지는 미국내에서의 범죄발생율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살인범죄율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의 증가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확실

히 이런 증가추세의 일부는 증가된 보고서록의 결과이다 더욱 많은 재산이 보험에 가입되므로, 국민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더욱더 경찰의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보고의 일부는 컴퓨터의 도입에 기인할수도 있다. 또한 세련된 경찰의 자료수집 계획도 한 원인이 될수 있겠다.그러나 의심할것도 없이 범죄 그자체는 증가하는 속성이 있다.

최근에 와서 범죄의 발생율은 비록 몇년전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만 이처럼 자연스런 성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타당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1) 경찰의 기능이 연방정부의 장비 지원과 훈련에 의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 사업 및 산업의 발전으로 보호기술(예를 들면 자동차 조향장치와 자동잠김장치)이 설치되고 더욱 많은 사설 경비원들이 고용되고 있다. (3) 가장 “범죄발생 가능성”이 많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집단이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FBI의 공식적인 범죄발생을 보고서는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율보다 상당히 낮은 숫자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고있다. 시민들은 경찰에 많은 범죄발생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시카고대학교「국민여론조사연구소」의 전국민을 상대로한 표본조사결과 FBI에 의해 보고된 범죄발생을 보다 실제로는 몇배 이상의 범죄 피해를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왜 국민들은 경찰에 범죄신고를 꺼려하는 것일까? 인터뷰에 의해 들어난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효과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해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미국내에서 경찰의 보호활동에 관한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다. 또다른 이유는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혹은 희생자들 스스로가 범죄자를 처벌하는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복의 두려움은 별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폭행이나 가족의 범죄일 경우에는 보통 그렇다 오늘날 범죄통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것은 하나의 유행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는 다만 일부의 의회가 불법적인것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BI의 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는 “피해자 없는 범죄”(마약남용, 매춘, 도박 등)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살인, 강간, 노상강도, 폭행, 주거침입강도, 그리고 절도에 관해서만 FBI는 이런 범죄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없이 보고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희생자가 없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거라고 가정(매춘부, 마약남용자, 혹은 강압에 의한 도박꾼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사람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급격한 범죄증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한다. 범죄의 방지 노력이 다만 중산계층의 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미국 전체인구의 약 12%가 흑인이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의 약 33%는 흑인이다. 즉 인구비에 비해서 범죄발생비가 거의 3배에 달한다. 더욱 흑인들은 범죄의 중요한 희생자가 되고 있는것이다. 예를들면, 살인사건의 희생자 중 43%가 흑인들이다. 흑인사회는 특별히 범죄와 싸워야하는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다.

현재의 미국내 형사사법제도는 확실히 범죄를 억제 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와 처벌사이의 교량을 가장 유용하게 평가하는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교도소에 수감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100명중 2명 이하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찰은 체포되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단지 약 1/5정도 성공적으로 수감시키고 있다. 4/5는 기소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으로 처리되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중죄를 구형받은 전체 범인의 약 반정도 만이 실

형선고를 받고 있다.

Ⅱ. 경찰과 법집행

1. 기본입장

미국에서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책임성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의 법무성 산하에 있는 FBI는 1920년대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단지 연방정부의 범만 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오늘날 연방정부의 법집행 역할은 증대되고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경찰의 국민보호, 재판제도, 그리고 교도소와 집행유예계획의 중요한 임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주 교도소는 약 30만명의 재소자를 수감하고 있는것에 비해서 연방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만 5천명 정도 수감되어있다.

우리 사회내에서 경찰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중요한 기능은 최소한 3가지가 된다. 즉 법집행 기능, 평화의 보호기능, 치안서비스의 제공기능이다. 실질적으로, 법집행기능은 경찰의 하루일과 중 단지 최소한의 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최소한 10%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기능이야말로 더욱 기본적인 임무(교통사고의 해결, 음주소란자의 처리, 교통소통, 군중들의 길안내, 고장차량의 지원 등)가 된다.

평화의 유지기능 역시 매우 기본적인 임무(싸움을 말리고, 소란한 행사를 진정시키고, 가정 혹은 이웃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이다. 평화의 유지기능은 법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활동이다.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의 기능 중 어려운 점은 그들을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형선고를 받고 있다.

Ⅱ. 경찰과 법집행

1. 기본입장

미국에서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책임성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다. 미국의 법무성 산하에 있는 FBI는 1920년대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단지 연방정부의 범만 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오늘날 연방정부의 법집행 역할은 증대되고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경찰의 국민보호, 재판제도, 그리고 교도소와 집행유예계획의 중요한 임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주 교도소는 약 30만명의 재소자를 수감하고 있는것에 비해서 연방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만 5천명 정도 수감되어있다.

우리 사회내에서 경찰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중요한 기능은 최소한 3가지가 된다. 즉 법집행 기능, 평화의 보호기능, 치안서비스의 제공기능이다. 실질적으로, 법집행기능은 경찰의 하루일과 중 단지 최소한의 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최소한 10%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기능이야말로 더욱 기본적인 임무(교통사고의 해결, 음주소란자의 처리, 교통소통, 군중들의 길안내, 고장차량의 지원 등)가 된다.

평화의 유지기능 역시 매우 기본적인 임무(싸움을 말리고, 소란한 행사를 진정시키고, 가정 혹은 이웃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이다. 평화의 유지기능은 법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활동이다.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의 기능 중 어려운 점은 그들을 어떻게 비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에서 최일선에 서 있다. 정말로, 법집행 역할 대신에 경찰의 중요한 기능은 평화유지 역할인것 같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체포활동에 있어 관대한것 같다. 사람을 체포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경찰은 우선 먼저 질서를 유지 하기를 더 원한다. 물론, 이런 결정은 커다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게 주어지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다소 관대해 질수 있다. 경찰의 운영을 결정하는 권한은 거리에서 이루어 진다.

경찰의 의사결정과 경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요인은 경찰과 접촉을 갖는 상대방의 태도가 될것이다. 만약 그 상대방이 경찰의 지시에 잘 따른다면, 즉 경찰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거나, 경찰의 기대에 부응한다면,(경찰에 대해 경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모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는 경찰에 의해 거의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경찰의 자의적인 대응이 아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수 있는 방법을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거리에서 경찰이 갖게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경찰문화”를 명료하게 요약한 하나의 연구가 있다.

1. 국민들은 믿을수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다.
2. 경험이 어떤 추상적인 규칙들보다 더 훌륭하다.
3. 경찰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경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모든 사람들은 경찰관을 싫어한다.
5. 경찰은 법원보다 유죄 혹은 무죄에 관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
6.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할 것이다.
7. 경찰은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8. 경찰은 범죄자를 정확히 식별할수 있다.

9.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10. 보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다.

도시사회에서 경찰에 부과된 임무는 고도로 훈련된 사회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것이다. 이제까지 경찰관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계층의 가정에서 충원했고, 다만 일부만이 중산계층의 가정에서 충원되었다. 극히 일부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였다. 일반적으로, 충원된 경찰관들의 출신에 의해 사람들을 분류하는것은 편견을 갖는 좋지 못한 것이며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 생활속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더욱 경직되게 한다. 공식적으로 경찰의 훈련내용은 대중과의 접촉에 있어 자기통제 및 조심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은 “불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우 친절한” 사람을 보게된다. 경찰력은 규칙의 적용에 종사하는 준군대적인 조직이다.

경찰은 그들 스스로가 권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권위에 존경하기를 기대한다. 가장 품성이 좋은 경찰관들조차도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존경이나 혹은 호감을 증대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흑인 빈민지역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는 종종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높은 범죄발생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경찰관이 빈민지역의 거주자를 의심하는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발생율이 경찰관의 의심을 종종 정당화 시켜준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거리위에 나와있는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여건들(빈곤, 인종주의, 실업, 낮은 교육수준, 인구과밀, 주택 등) 위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성향과 시간을 갖고있지 않다. 대신에 대부분의 경찰은 스킨(Jerome Skolnik)이 언급한 인간성의 시각인 “썩은사과”로서의 범죄는 나쁜 개인들

의 의도로 귀속되어질수 있다.

스콜닉은 한 경찰관의 간단한 메모를 인용했다. “빈곤은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태도는 거리에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로서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재빨리 범죄화하려는 세심한 경찰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경찰관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나 혹은 경찰관의 출현에 대해 “흥분한 것” 처럼 보이는 사람, 화장실, 운동장, 상점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 등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만약 경찰이 지나치게 흑인들을 의심한다면, 빈민지역의 많은 흑인들 역시 경찰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대적일 것이다. 흑인 소설가 발드윈(James Baldwin)은 흑인 빈민지역에 근무하는 경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찰관의 출현은 곧 흑인에 대한 모욕이다. 경찰 뺨지와 권총 그리고 권총지갑, 경찰봉은 흑인들의 반발을 생생하게 만들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상당히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증가된 경찰인력과 증가된 경찰예산이 도시에서 상당수의 범죄를 감소시킬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가정을 증명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산출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찰인력과 경찰예산의 관계에서 범죄발생율에 관한 연구들은” 더 많은 경찰활동이 바로 더 적은 범죄를 의미한다”는 이론을 지지하기위한 분명한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

수많은 다른 요인들(도시규모, 인구밀도, 도시성립의 짧은 역사, 실업, 인종, 빈곤 등)이 도시내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것 같다. 도시에서는 경찰활동이 무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혹은 경찰활동의 증가는 증가된 보고기록에 따른 결과 인지도 모른다. 공식적인 통계에서 범죄발생율의 실질

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믿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어떠한 간에, 미국 사회에서 범죄율 감소문제는 잘 잡히지 않는 목표로 보여진다.

2. 범죄와 총기

많은 범죄들이 총기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FBI가 1980년 보고한 통계를 보면 전체 흥분된 상태에서의 폭행사건 중 24%, 전체 노상강도의 40%, 그리고 전체 살인사건의 62%가 총기를 사용해서 저질러진 범죄이다. 총기를 등록하고, 총기소유의 면허를 발급하고, 혹은 권총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총기규제법률은 엄청난 숫자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나 혹은 암살사건을 선제(先制)하기 위한 기본정책이다. 1968년 제정된 연방총기규제법(Federal Gun Control Act)은 상원의원 이었던 케네디(Robert F. Kennedy)와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암살사건에 대응해서 그해에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포드(Gerald Ford)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는 이후에 부가적인 제한을 입법화 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총기소유자에 대한 면허 발급과 또는 총기소지의 금지를 위한 논리적 근거는 모두가 만약 총기의 소지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총기에 의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만약 칼, 곤봉, 혹은 맨주먹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총기의 사용 때 보다 물리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살인사건(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이웃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수 있는 우발적인 범죄)은 줄어들 것이다. 총기는 전체 살인사건의 62% 그리고 전체 자살행위의 56%에서 사용되었다. 총기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다른 진보된 국가들 보다 제한적인

총기관련 법률을 적게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이 가장 높은 살인발생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기의 소유권은 미국 전지역에 확대되었다. 2억 3천만 정도의 미국인들 중 아마도 1억 5천만명 정도의 미국인들에게 각종 총기가 소지되어 있을 것이다. 총기소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미국가정의 약 반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총기 소지자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총기소지 목적은 사냥과 스포츠를 위한 것이고 약 1/3정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총기소지자의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총기소유의 금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총기소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범죄와 폭력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총기소지 혹은 판매허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역시 권총소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규제법이 격렬한 범죄를 줄일수 있다는 체계적인 증거가 없다. 만약 우리가 엄격한 총기관련 법률을 갖고 재판을 하는 4개의 주(특히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일리노이스)와 관대한 다른 주의 격렬한 범죄발생률을 비교해 본다면, 그 비율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총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것 같다. 정말로 총기관련법률은 총기소유에 관해서 어떤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총기소지 면허증도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행선고를 받도록 되어있는 매사추세츠주에서조차도 총기와 관련된 범죄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총기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 재소자의 수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전체 국민들의 총기소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격렬한 범죄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

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공공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논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총기규제에 관해서만은 미국과 다른나라의 사정에 관해서 놀랄 만큼 엄청난 비교를 하고 있다. 총기규제 옹호자들은(총기소유가 금지되고 격렬한 범죄가 매우 희소한) 영국과 일본의 경험을 인용하고 있다. 총기소유의 옹호자들은 이스라엘 민병대(18-50세)원들이 그들의 자동화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격렬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인용한다. 요컨대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서 총기규제의 가치를 논의하는 것은 문화적요소들 때문에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총기규제는 또한 헌법상의 쟁점을 포함하게 된다. 미국수정헌법 제2조는 “잘 훈련된 국민군과 무기를 휴대하고 무장할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않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총기를 휴대할수 있는” 권리를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처럼 헌법이 개인들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보고한다. 총기규제 옹호자들은 수정헌법 제2조의 규정은 주 국민군의 조직을 위해 국민들의 단체적 권리이지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의 권리는 국가경비대에 속하는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어느쪽의 해석이든지 다 타당한 면이 있다. 총기규제 반대자들은 권리장전속에 있는 모든 권리는 개인의 권리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채택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시민들의 무기를 몰수하고자 하는 식민주의자들의 야심과 그리고 그들이 독재정치에 저항하려는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초기 미국인들의 정치적 웅변술은 만약 필요하다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하는것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그리고 “국민군”은 모든 성인 남자는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수 있는것으로서 정의되었다. 초기 영국의 관습법 조차도 “자기보호와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총기를 갖거나 사용할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아마도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과 혹은 헌법상의 해석과는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도 모른다. 대신에 그것은 갈등을 빚고 있는 2개의 윤리를 도출시키고 있다. 즉 법, 재판,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고 문명화된 상위계층의 자유로운 윤리가 있다. 거칠고 때때로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윤리가 역시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윤리는 총기규제의 쟁점에 관해서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3. 범죄와 마약

미국에서 마약복용에 대한 공공정책은 양면가치를 지니고 있다. 알콜과 담배는 비록 미국공중보건국 사업소(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가 그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홍보 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라디오와 T.V를 통한 선전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상품이다. 마리화나는 여러 주에서 “비범죄화 된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의 사용과 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한것 같은 경범죄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에서는 마리화나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하고 이를 범죄적 행위로 인정하며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의약품, 진정제, 각성제, 수면제의 판매 과정에 대한 규제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코카인의 사용 및 소지는 미국 전 지역에서 형사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헤로인은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지만 미국내에서의 사용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 마약 사용의 여러가지 형태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 약물남용에 관한 국립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하는 1200만명에서 1400만명의 “심각한 알콜중독자”가 있다.

전체인구의 약 33%를 차지하는 6500만명의 흡연자들이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1600만명이 마리화나의 상용자로 밝혀졌다. 최근의 코카인 사용자의 수는 전체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1000만명으로 갑자기 증가되었다. 시골지역에서 헤로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150만명으로 보고되었다.

마리화나 사용에 대응한 공공정책에 있어서 정부 엘리트와 대중들의 시각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1920년에서 1933년까지 13년 동안 알콜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 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 사법권에서는 알콜의 생산 및 판매를 합법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마라화나는 계속 비합법화 되고 있다.

마라화나를 사용하다 체포된 사람들의 수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연간 150만명에 육박했다. “심각한 음주자”와 마리화나의 상용자의 수는 서로 엇비슷했다.

마리화나의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정부 엘리트의 자녀들이 매우 자주 약물 과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결과 1970년대에는 마리화나 규제법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재판관과 검사들은 마리화나 사용자들에게 좀더 관대해 졌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마

리화나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소량의 소지”는 “형사법”으로 처리해서는 않된다고 믿고 있다.

헤로인의 사용자에 대한 공공정책은 더욱더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엄격하게 대처해오고 있다. 1916년의 헤리슨 마약법(Harrisson Narcotic Act) 이후, 헤로인의 사용은 중요한 법집행 문제를 고려하게 만들었다.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1920년 부터 헤로인의 사용은 의학적 문제로 취급했다 그리고 헤로인은 국가보건성(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의 의사들을 통해 중독환자들에게 조제해 주었다. 미국에서의 헤로인 중독은 영국에 비해서 중독자들에게 의해서 자행된 범죄의 건수 면에서 훨씬 더 많았다. 최근에 와서 코카인은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주요한 마약으로서의 헤로인으로 대체되었다. 대부분의 법집행관은 헤로인이나 코카인의 거래를 법집행에 의해 제거할수 있다는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코카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법집행 노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코카인은 비록 금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체적 중독으로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는 이것이 수입되고 있다.

코카인의 높은 가격(또한 절찬리에 사용되는것)은 비록 거기에는 이미 그것을 “비범죄화” 할려는 강력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유층 사회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마약거래와 관련된 범죄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다. 다양한 약물들의 건강상의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약거래의 세계는 폭력을 동반한다. 판매인은 구입자를 상대로 강탈하거나 살해하고 그리고 반대로 구입자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강탈하거나 그를 살해하려 한다. 어느쪽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범죄행위는 경찰이나 재판부로부터 보호를 구하지 못한다.

Ⅱ. 요약 및 결론

범죄는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법집행과 형사사법정책은 경찰의 보호, 총기, 마약 등에 관한 자주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제도는 (특히 사법부) 직접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 시민대중들의 권리보다 개인들의 권리보호에 더 주력한다.

1. 1960년에서 1975년까지는 꾸준한 범죄발생율이 증가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범죄 발생율의 분포가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증감현상은 정부의 범죄 억제정책의 효과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체인구의 구성비에서 범죄가능성이 큰 젊은 사람들의 구성비가 더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희생 가능성 비율”은 보고되는 범죄발생율 보다 몇배 이상 더 크다. 이런 통계는 현재의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의 억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것을 암시한다.
2. 많은 격렬한 범죄속에는 총기를 사용한 범죄도 포함된다. 총기규제에 관한 공공정책은 국가 전역에 변화를 준다. 하지만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주도 그런 법을 갖고있지 않은 주보다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물론, 격렬한 범죄의 발생율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3. 알콜과 마약사용에 대응한 공공정책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 비록 담배, 알콜, 마리화나, 코카인, 그리고 헤로인이 신체에 미치는 해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이런 물건들의 각각의 사용, 생산, 그리고 판매는 법집행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4. 엘리트들은, 특히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권리를 상당히 보

호해 주고있다. 대법원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피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사회학자들은, 처벌은 범죄사건에 대해 어떤 효과도 없다고 일단 믿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법적인 억제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처벌의 정확성과 가혹성은 둘다 범죄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되는것 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처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